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위취득 지원비 지급 규정

제정: 2020.10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지원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 대상) 본교 소속 교직원(교원, 직원)으로 한다.

제3조(지급범위 및 지급금액) ① 교육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교직원에 대해 학위취득 지원비를 지급한다.

② 금액의 지급범위는 대신대학교 석사과정 평균 학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업료 이내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, 세부 금액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③ 본 지원비는 교직원 재직 중 한 개의 학위과정에 한한다.

④ 위 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 범주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선발과정) 사전 신청과정을 거쳐 지원자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, 관련 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.

제5조(제출 서류) 학위취득 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위취득 지원 신청서
2.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
3. 등록금 통지서 및 영수증

제6조(지원중단) 학위취득 지원자로 선발되어 지원비를 지급받은 이후 ‘감봉’ 이상의 징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7조(기타) 본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취득 지원비를 지급받은 후,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.

제8조(중도포기) 학위취득 지원비를 지급받은 후, 질병 또는 국가재난상황으로 인한 병, 휴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외에 지원자 본인의 의사로 학위취득을 포기하는 경우, 학위취득 지원포기서를 제출하고 지원비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